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수도 요금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장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,
- 안정적 재원 확보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함
-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정비

3. 주요내용

- 상수도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2.5% 총 12.5% 인상(안 별표 2, 별표 4)
 - 2016년 11월 고지분부터 조정(원/ m³ 당)
- “수도사용자와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.” 는 조항 삭제(안 제 2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수도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,
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수도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2016. 4. 6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침
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 - 원가대비 낮게 책정된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관련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
 - 장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